

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I 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942호,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」은 202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 .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

1. 기금개요

- **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**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설치한 기금(이하 ‘공제기금’ 이라 함)으로,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‘공제회’라 함)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관리·운용하는 기금임
- 동 기금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타 시·도교육청의 법령해석 의뢰에 따르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상의 기금에 해당되어 의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인 바,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」을 의회에 제출한 것임

2. 검토내용

(1) 기금 조성규모

- '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56억 9,100만원으로 '21년도말 조성액(76억 7,100만원)과 '22년도 추가 조성되는 71억 9,000만원에 대하여 91억 7,1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운용계획하여 제출된 바,
- '21년도말 조성액 대비 $\Delta 25.8\%$, $\Delta 19$ 억 8,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

〈표 2-1〉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기금명	2021년도말 조성액 (A)	2022년도기금운용계획		2022년도말 조성액 (B=A+㉠-㉡)	증 감	
		수입㉠	지출㉡		증감액 (C=B-A)	증감률 (C/A)
학교안전공제 및 사 고 예 방 기 금	7,671	7,190	9,171	5,691	$\Delta 1,980$	$\Delta 25.8$

(2) 기금 수지현황

1) 기금 수지 총괄

- '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지총액은 148억 6,200만원으로 '21년도(144억 3,800만원)보다 2.9%, 4억 2,400만원 증가한 규모임

〈표 2-2〉 기금 수지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%)

수입					지출				
항목	2022년 수입액	2021년 수입액	증 감	비 율	항목	2022년 지출액	2021년 지출액	증 감	비 율
합계	14,862	14,438	424	2.9	합계	14,862	14,438	424	2.9
기부금	-	1	△1	△100.0	비용자성 사업비	7,598	6,439	1,159	18.0
예치금 회수	7,671	7,394	277	3.7	인력 운영비	1,261	1,269	△8	△0.6
이자 수입	23	27	△4	△14.8	기본경비	310	336	△26	△7.7
기타	7,166	7,017	149	2.1	예치금	5,691	6,393	△702	△11.0

2) 기금 수입계획

- 수입계획은 148억 6,200만원으로 ①'21년도말 기금조성액을 재원으로 하는 예치금회수 76억 7,100만원을 포함하여 ②'22년도에 수입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수입 71억 6,600만원과 ③이자수입 2,400만원임

〈표 2-3〉 기금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, %)

항 목	세 부 내 역	2022년도		2021년도	증 감	
		(A)	구성비	(B)	금액 (C=A-B)	비율 (C/B)
합	계	14,862	100.0	14,438	424	2.9
기 타 이 전 수 입	교 육 청 교 육 금 고	-	0.0	1	△1	△100.0
예치금회수	소 계	7,671	51.6	7,394	277	3.7
	사 무 국 임 차 보 증 금	248	1.7	248	0	0.0
	공 제 사 업 이 월 금	5,963	40.1	5,643	320	5.7
	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금 이월금	126	0.8	140	△14	△10.0
	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월금	1,333	9.0	1,362	△29	△2.1
기 타 수 입	소 계	7,166	48.2	7,017	149	2.1
	학 교 안 전 공 제 료	6,859	46.2	6,753	106	1.6
	교 육 활 동 참 여 자 공 제 료	31	0.2	31	0	0.0
	소 방 사 업 수 익	160	1.1	120	40	33.3
	학 교 폭 력 구 상 금 회 수	20	0.1	93	△73	△78.5
	법 인 세 환 금 금	94	0.6	20	74	370.0
이 자 수 입	예 금 이 자 수 입	24	0.2	27	△3	△11.1

○ **학교안전공제료**는 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납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

-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 49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금액 산정기준에 학교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'22년도 공제료 단가를 결정하고 있음

■ '22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는 교육부 고시금액보다 4.9%, 350원 인상된 7,425원(평균)으로 금년도 공제료 단가(6,958원)보다 6.7%, 467원 높게 산정된 바,

■ '22년도 등교수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공제급여 지출 증가가 예상되어 교육부 기준 공제료 대비 4.9%를 인상하여 최종 공제료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

〈표 2-4〉 2022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

(단위 : 원, %)

구 분		유	초	중	고	평균단가
2022년도	공제회계획(A)	2,940	4,510	9,550	12,700	7,425
	교육부고시(B)	2,800	4,300	9,100	12,100	7,075
2021년도	공제회단가(C)	2,530	4,400	9,350	11,550	6,958
교육부 고시금액 대비 공제회 계획 증감률 D=(A-B)/B		5.0	4.9	4.9	5.0	4.9
전년도 대비 공제료 증감률(E=(A-C)/C)		16.2	2.5	2.1	10.0	6.7

- **소방사업수익**은 '21년도(1억 2,000만원) 보다 33.3%, 4,000만원 증가된 1억 6,000만원으로 계획한 바,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공제회가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 대한 '22년도 예상 수익금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

- **예치금회수**는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'21년도(73억 9,400만원) 대비 3.7%, 2억 7,700만원이 증가된 76억 7,100만원이고, **이자수입**은 '22년도 정기예금 만기이자분을 반영하여 '21년도 대비 Δ 11.1%, Δ 300만원이 감소된 2,400만원을 계획한 것임

2) 기금 지출계획

- '22년도 지출계획은 148억 6,200만원으로 정책사업 기준 ①학교안전망 구축(91억 7,100만원), ②예치금(56억 9,100만원)으로 지출계획한 것임

〈표 2-5〉 기금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2022년 지출액	2021년 지출액	증 감
합 계					14,862	14,438	424
교 육					14,862	14,438	424
	유 아 및 초 중 등 교 육				14,862	14,438	424
		학 교 안 전 망 구 축			9,171	8,045	1126
			학 교 안 전 망 구 축		7,598	6,439	1159
				공 제 사 업	6,906	5,683	1223
				예 방 사 업	416	478	△62
				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	25	27	△2
				학 교 폭 력 피 해 지 원	249	245	4
				교 직원 온 라 인 상 담 창 구	0	3	△3
			인 적 자 원 운 용		1,572	1,605	△33
				인 건 비	1,261	1,269	△8
				업 무 추 진 비	23	23	0
				운 영 비	286	312	△26
예 비 비					5,691	6,393	△702
	예 비 비				5,691	6,393	△702
		예 비 비 및 기 타			5,691	6,393	△702
			보 유 준 비 금		4,410	5,068	△658
			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예치금		100	112	△12
			학 교 폭 력 피 해 지 원 예 치 금		1,180	1,212	△32

○ 현행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정한 것은 기금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, 기금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료되는 바,

- 동 기금운용계획의 경우, 지출 편성목상 ①**비용자성사업비**(공제사업, 예방사업, 피해자상담 등)와 ②**인력운영비**(인건비), ③**기본경비**(운영비)를 1개의 정책사업(학교안전망 구축)으로 운용계획하고 있으나

- 동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정책사업 중심으로 재구조화 하여 기금운용을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